

法 과 建 築

崔 昌 奉
(新進建築)

人間은 長久한 歷史를 거쳐 오는 동안에 数 많은 法을 制定했고 滅棄했고 改正해왔다. 그리고 오늘도 또한 새로운 法을 制定해 내고 있다. 무릇 法이란 人間의 共同社会生活의 規範이고 秩序임에는 틀림없다. 또 法이란 人間의 倫理, 道德, 常識에 있어 最下線을 그어놓은 下限值이기도 하다.

法에는 大陸系法과 海洋系法이 있다고 한다. 大概의 境遇 民主国家에서 海洋系이고 專制, 独裁, 共產系 国家에서 大陸系法을 實施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民主国家이므로 海洋系法이라고 생각되나 法에는 몇가지 特殊한 本質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特色은,

- ① 어여한 法이든 制定할 時에는 立法精神과 趣旨가 반드시 있다.
- ② 法이 제아무리 嚴해져도 違反은 根絕되지 않는다.
- ③ 朝令暮改하는 法은 複雜하고 矛盾만을 가져온다.
- ④ 지나친 細部制約은 創一性을 強要하게 된다.
- ⑤ 法은 条文으로 成文化되어있기에 그 解釋이 내려졌을 때 其効가 나타난다.
- ⑥ 法 解釋에는 複數性이 있다.
- ⑦ 法이 法精神과 趣旨를 超越할 때는 秩序가 破壞된다.
- ⑧ 法은 지켜야할 者들이 制定하고 遵守하는 것이다.
- ⑨ 法은 萬人에 平等하고 特惠가 없다.
- ⑩ 法이 特定人이나 特定團體에 偏重될 때 그 社会는 危殆로 치진다.

以上 가장 常識의인 法의 特性을 指摘해 놓고 우리 建築設計部門이라는 側面에서 그 周辺을 살펴보아야만 하겠다.

建築設計가 藝術과 技術이 合친 創作活動이라고 한다면 地球上 어느 国家도 이 創作을 制限할 法은 제정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그 課程이나 手段은 制限함으로서 結果의으로 創作自體에 어떤 制限을 하는 것이 되는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다.

우리 社會에서 現存하는 建築設計에 関聯되는 数 많은 法令과 規定, 條例와 施行細則, 特例와 指示, 示達과 勸誘 等等을 前記 10個項의 法의 特質에다 비추어 보면 얼마나 많은 再檢討가 必要한가를 혜아릴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法은 法을 為해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社會生活을 為해 있는것이기에 法은 人間의 便에 서야 할 것 이지 法의 便에 설 수 없는 것이다.

法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 制定해서 지켜야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專門의in 職能業이면서도 이 部門의 法이 어디서 누가 어떤 法을 制定해내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오직 法이란 지켜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다.

勿論 民主国家에서 国民全員이 立法에 參與할 수 없으니 立法議員을 選出하고 그 議員들이 立法을 하니 即시 지켜야 할 우리가 立法한 것으로 名分은 되어 있다. 또 職能代表나 地域代表 等의 專門家들을 立法部에 보내고는 있지만 그들이 立法部에 가서 우리의 所望하는 法들을 制定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法母文은 單語나 文章으로 되어 있으니 有權的 解釋이 내려질때 비로서 그 法이 執行되는데, 여기서 有權的解釋의 差異가 發生된다. 이것이 바로 法의 複數性인데 国民과 執行者와 差異, 上級法官과 下級法官의 解釋差異가 반드시 發生한다. 그래서 二審制가 採択되고 있는 것이지만, 官과 民의 差異 特히 專門分野에 関係되는 法規의 有權的 解釋이 官의 解釋이 無條件 優先한다는는데는 異議가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일은 잘못하면 行政力이 法을 超越하는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무릇 权力이란 쓸면 쓸수록 強大해지고 안쓰면 안쓸수록 弱化된다는 特質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亂用하기 始作하면 겉잡을 수 없고 权力 即 法이 되고 社會秩序는 混亂에 빠지게 된다는 原理가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러한 見解는 近者 建築에 関한 法體系가 到底히 建築設計를 하는 建築士들의 머리로서는 整理할 수 없을 程度로 肥大多樣化해 가고 常識의으로도 理解가 안가는 法解釋에 얹매여지는 그러한 經驗을 가진 建築士가漸次 많아졌다는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나 意

見은 感情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近代国家의 法思想本質에서 出發해야할 問題라고 생각되고 더욱 우리들과 같이 法專門家도 아닌 사람들에게 까다로운 法思想의 本質이 理解될리 없지만 法令集 等을 뒤적거리다가 現行建築에 関係되는 諸 法規에 대해 문득문득 일어나는 생각들이지만 法이 제아무리 嚴해도 違反建築이 根絕되지 않는 理由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만든 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根底에 깔린 생각에서가 아닐까? 若干의 違反이 있어도 보아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連結되는 것만 같다. 또 執行者側에서도 그런 傾向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며 여기서 우리가 만든 法이라는 自覺을 가질 수 있는 法이란 어떤 것일까를 알아내는 일이 先決되어야만 이런 問題가 解消될 줄로 믿어진다.

또 建築確認이 되는 竣工検査의 解釋도 統一되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中央과 地方·地方과 地方에 따라 다 다른 理由는 무엇인가. 法의 解釋理論上 複數性이 있다는 것은 理解되나 設計者에게도 解釋은 있을 것이고 行政의 解釋이 無条件 優先한다는 것은 너무나一方의이고 独善的이 아닌가? 設計者가 凍解할 수 있는 解釋은 親切히 해주므로서 修正에 応할 수 있게 常識과 合致된다면 法의 解釋도 一致될 境遇가 많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朝令暮改하는 各種 法規는 複雜과 矛盾과混亂을 招來하고 만다.

行政側은 多数의 国民을 相對로 公共的인 立場에서 個個인의 의사는 전혀 介意치 않고 独斷的으로 創一平等하게 規制할려고 한다. 때문에 우리는 建築確認時에 痛感하는 것은 行政力의 本質과 法規의 改變性의 矛盾을 發見할 때가 많다. 建築은 社會的 資產으로서 長期間 使用된다는 大前提가 있다. 여기에 너무도 細密한 部分까지 規制를 한다면 이것은 創一性과 強行性의 缺陷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特히 建築의 細部마감의 規制等은 表現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이 되고 人間生活環境創作이란 面에서 볼 때는 阻害要因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立法이나 執行側은 그들의 本質만을 優先 시키고 建築의 本質이나 社會的인 役割等은 無視한다는데 그 遠因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建築에 関係되는 모든 法令들은 立法이나 行政을 為해서 制定되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建築이란 一種의 社會的인 狀況을 為해서였던가? 特히 專門分野에 關한 法들이 行政의 便利를 為해 있다고 한다면 그 法은 이미 存在價值 조차 없는 것이고 그런 法이 橫行한다면 그 社會는 매우 위태로운 地境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와 反對로 法이 建築의 本質을 理解하는 法이고 解釋이 保護나 發展의 便에서 이루어진다면 人間의 住環境은 清澄해지고 社會

는 文芸中興이란 狀態로 나타날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우리는 法의 权威와 尊嚴性은 理解되고 있지만 特例法이니 또 그로 因해 나타난 機構들의 橫暴를 잘 알고 있다. 例를 들면 各機關에 있는 審議機構들의 組織이나, 役割을 말이다. 소위 審議機構란 建築設計의 專門性은 認定하는데서 나온 것인데도 그 組織이나 役割이 빛나갈 때는 施行의 精神이나 趣旨를 超越한 것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例를 들면, 서울의 境遇 美觀審議委는 그 地區의 美觀을 為해 果然 어느만한 役割을 해 왔는가가 疑問이 되는것이고, 委員 거의가 建築專門家(그것도 上級) 인데도 美觀 (造形, 色彩, 材料 等에 置重해야 할텐데)에 重點을 두기보다 内部의 平面計劃이나 階段 出入口의 尺寸等에 心經을 쓰고 있고 또는 審議用圖面에 委員數 대로 的 寫眞이나 透視圖를 提出하라는 等 可笑로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社會狀을 如實히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式의 意識構造라면 美觀地區內의 設計는 그 委員들만이 할수 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高級專門家들이 圖面을 解得 못해서 많은 圖面과 透視圖를 提示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며 建築設計에서 透視圖란 圖面解得이 어려운 建築主들에게 一種의 說明材料임에 不過한데 到底히 그 底意를 알 수가 없다. 審議委員이란 쥐꼬리만한 주어진 권限의 極大化로 权威을 내세우는 그들에게 懈情을 禁할 수 없다.

數年이 지나온 서울美觀地區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또는 惡化되는었지? 全部 그들이 責任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各 地方의 境遇도 同一한 条件下에 있고 提出되는 書類나 圖面의 種類나 部數도 審議方法도 各樣各色이다. 設計業務에 따르는 行政 手續(契約, 収金 等)의 節次나 様式도 各樣各色으로 다르니 이리등절한 經驗을 建築士들은 많이 쥐어왔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같이 他法과의 関係에서나 建築關係法 解釋의 差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諸般 規定이나 制限에서 벗어나지 않고 複雜하고 多樣한 規制로 因한 創期의인 “아이디어”나 大胆한 意圖는 固捨하고라도 行政面에 未熟한 우리들의 業務는 委縮되기 마련이고 또 懲罰을 받는 會員의 수는 그들의 摘發件數의 記錄만 높여주고 建築設計業務의 主된 目標에로의 길은 멀기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勿論 우리 사회가 이러한 潮流에 있음은 여러가지 要因이 있겠으나 그 中의 重要한 하나는 우리自身들의 安逸한 姿勢나 不誠實도 作用되고 있다는 点을 생각할 때 自覺하고 自重해야 할 点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弊 一言하고 世上萬事는 相對的인 原理下에 있다. 法만이 나쁘고 우리만이 옳다는 뜻은 아니다. 서로가 生活하는 이 社會에 相互가 協力하고 理解할 때 우리과는 근히 바라는 善良하고 좋은 社會가 이룩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린 너무도 우리들의 業務에 関係 되는 法規에 對해 너무 無知, 無關心 狀態에 있는것 같이 생각되므로 法과 業務와의 相關關係를 서로가 더 생각보자는데 이글의 뜻이 있는 것이다.

建築關係法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어떤 法을 만들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이고 이 作業에 專門業의 立場에서 參與할 수는 없는가? 法解釋을 官一邊倒로만 해야 할것인가? 行政面에서의 圖面이나 書類의 樣式 種類 및 作成部數의 統一은 안되는 것인가? 建築士는 自己

가 制作하지 않은 圖面에 對해 連帶責任을 져야 하는가? 事務室의 規模가 即 大型設計를 할 수 있는 基準이 되는가? 建築이란 果然 創一的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建築士는 適切한 報酬도 없이 官의 業務를 補助해야하는가? 司法權이 없는 建築士가 果然 冷嚴한 監理를 할 수 있을까? 또 할 수 없으면서 責任은 져야하고 处罰은 받아야만 하는가? 官이나 建築主의 違法은 建築士가 왜 짊어져야하는가? 等等 헤아릴 수 없을 程度의 많은 疑問이 있으니 우리自身들이 모여서 善意로 建設의 으로 생각해 볼 必要는 없는가 하는데서 이글을 쓰게 된 것이고 이것이 今日의 社會問題임에는 틀림없은즉 이러한 社會問題를 当局에만 맡길일이 아니고 우리들끼리도 무엇인가 方策을 講究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야흐로 經氣沈滯로 建築設計等의 萎縮은 눈에 띠게 되고 雪上加霜格으로 設計自体에도 많은 制限이 加해지고 있는 이 때 우리는 다같이 이 問題는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

技師 1,2 級·建築士·公務員 100% 合格을 위한 必須書!

最新建築問題集(改訂版)

서울·京畿地區專門大學建築科教授會 編 / A5·5 과목 합본 3,000문제 수록 定價 7,500원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적산·재료, 건축설비, 건축법규

과목별 1,000여 문제 수록! 완벽한 내용!

“각 과목별 부록으로 과년도 출제문제 수록”

'81 建築法規問題解說

朴泳吉 編著

A5·404面 定價 4,500원

建築施工積算問題解說

金禎炫 編著

A5·470面 定價 4,500원

建築構造問題解說

朴奉星 編著

A5·400面 定價 3,800원

近刊 建築設備問題解說

建築計劃問題解說(改訂)

蘇暘燮
姜秉國 編著

A5·368面 定價 3,500원

소방기사 1,2급·건축기사 1,2급

建築材料問題解說

趙道衍 編著

A5·226面 定價 2,800원

圖書出版技文堂

서울特別市 鍾路區 凤奐洞154

☎ 764-4151 · 764-1149

부산 연락처 ☎ 66~5686

◎ 全國有名書店에서 販賣中!

안정위에 다진도약 이룩되는 자주외교